의안번호	제 1048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2년 6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호 1048 제출연월일: 2022년 6월 3일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창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의 실시 및 위탁(안 제6조)
-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안 제7조)
- 사업비 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유공자 포상(안 제10조~제11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창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창업 관련 현황과 여건 분석
 - 2.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창업 인프라의 확충
 - 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 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 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7.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혁신역량 제고
 - 8.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5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창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 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삭제 <2020. 2. 11.>
- 4의2. 삭제 <2020. 2. 11.>
- 5. 삭제 <2020. 2. 11.>
-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2. 6. 29. 시행 예정인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 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 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 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 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창업기업 지원 사업 수행

3. 관련조문

- 안 제7조(창업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③ 협력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5년)
- 비용 기준 : 창업 지원사업 예산기준 작성, 국비 등 포함

나. 추계결과

- 창업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 충북창업스타티움 운영지원 : 60,000천원
 - · 전담인력인건비 30,000천원 × 1명 = 30,000천원
 - · 프로그램운영비 5,000천원 × 4개 프로그램 = 20,000천원
 - · 시설관리비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대응): 204,000천원(국134,000 도50,000 시군20,000)
-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육성,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지원, 기술기반 창업지원 사업
 - 시니어 기술창업지원(대응): 156,000천원(국136,000 도20,000)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대응): 4,700,000천원(국4,575,000 도105,000 기타20,000)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대응) : 2,586,000천원(국2,336,000 도100,000 시군50,000 기타100,000)

- 혁신창업페스티벌 개최(도비) : 100,000천원×1회
 - · 행사장 임대 및 장치비(전시장 부스 설치 등) = 40,000천원
 - · 홍보비(홈페이지,광고 등) 및 인쇄비(포스터, 초청장 등) = 20,000천원
 - · 일반운영비(회의, 행사추진운영 등) = 40,000천원
 -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 창업보육센터운영 : 221,000천원 ※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교부
 - (A등급 16,000천원×3개) + (B등급 14,000천원×5개) + (C등급 12,000천원×4개)
 - + (D등급 11,000천원×3개) + 평가제외 11,000천원×2개) = 221,000천원 (센터 평균 13,000천원)
 -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창업유관기관 회의 시 수당(도비) : 130,000원×15명×연3회(안) = 5,850천원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 실태조사
 - 충북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다. 재워조달방안

- 공모사업 : 국비 매칭 도비 대응비 편성
- 창업스타티움 운영, 창업페스티벌, 협력체계 구축, 연구용역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40,184,250	8,032,850	8,032,850	8,032,850	8,032,850	8,052,850
창업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1,320,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창업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	37,710,000	7,542,000	7,542,000	7,542,000	7,542,000	7,542,000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1,105,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협력체계 구축 지원	29,250	5,850	5,850	5,850	5,850	5,850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20,000					20,0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정선미(220-3210)